

명예교수 규정

1991. 8. 29 제정

2018. 11. 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퇴직교원은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다. (개정 2014.11.21)

1.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학문 또는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
2.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하고, 본교 임용 전 경력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문 또는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

② 본교 발전에 특별하게 공헌한 교원은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근속연수에 미달하더라도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교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는 명예교수 추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4.11.21)

제3조(추대 절차) ① 명예교수는 추대 대상자가 소속했던 전공(학과)교수회의 발의와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추대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전공(학과)교수회의 발의가 없거나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소속 전공(학과) 교수회에서 명예교수 추천을 발의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피추천인이 퇴직하는 학기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총장에게 명예교수 추대를 추천한다. (개정 2014.11.21., 2018.11.21.)

③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추천될 수 있다. (개정 2018.11.21.)

④ 명예교수의 추대 여부는 피추천인이 퇴직하는 학기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21.)

⑤ 퇴직한 이후 추천 및 재추천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때 제2항 및 제4항의 ‘퇴직하는 학기’는 ‘추대절차가 시작되는 학기’로 본다.

(개정 2014.11.21. 2018.11.21.)

제4조(구비서류) 대학(원)장이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피추천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1)

1. 이력서
2. 교육 및 학문상의 공적서
3. 본교 발전에 공헌한 공적서

4. 명예교수 추천 의견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처우) ① 명예교수에게는 명예교수의 직위를 부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며,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② 명예교수는 본교의 제 의식에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③ 명예교수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개정 2006.5.9)

제6조(명예교수심의위원회) ① 명예교수의 추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대학원장, 피추천자의 소속 대학(원)장, 교무처부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은 위원장이 되며, 교무처부처장은 간사가 된다. (개정 2001.5.11)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5.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적위원에는 각 피추천자의 소속 대학(원)장이 모두 포함된다. (개정 2018.11.21.)

제6조의2(자격박탈) 명예교수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9)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1. 8. 29 제정)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6 개정)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1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구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임기로 발령된 자의 임기는 신 규정에 의하여 15년으로 발령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5. 9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대된 명예교수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부 칙(2009. 12. 16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21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추대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퇴직교원 중 구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명예교수로 미추대된 자 또는 추대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명예교수심의를위원회를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8. 11.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